

안양시 고시 제2025-272호

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번지 일원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·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5. 12. 24.

안 양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) 종 류 : 재건축사업

나) 명 칭 :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) 위 치 :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번지 일원

나) 면 적 : 62,556.7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) 성 명 :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나) 주 소 :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40, 2층(관양동, 정수빌딩)

다) 대표자 : 김정엽

4. 정비사업의 시행(예정)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5. 12. 24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해당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

구 분		획 지 1								비 고
주 용 도	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							
대 지 면 적		53,580. ⁰⁰ m ²								
건축면적(건폐율)		8,047. ⁹¹⁸¹ m ² (15. ⁰² %)								
연 면 적(용적률)		266,126. ⁸⁸²⁰ m ² (296. ⁹³ %)								
동수 및 층수		8개동 / 지하 4층 ~ 지상 36층								
주 차 대 수		2,407대								
세 대 수		1,294세대								
높 이		114. ⁸⁵ m								
※ 평형별 세부계획										
구 분	합계(임대)	59m ² A	59m ² B	74m ²	84m ² A	84m ² B	84m ² C	94 m ²	103m ² A	
		97(32)	27	62	355	222	55	30	35	
세대수	1,294(32)	103m ² B	107m ²	120 m ²	130m ² A	130m ² B	130m ² C	134 m ²	157mPH	
		69	67	35	35	35	33	104	1	
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

가)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

① 도 로

구 분	구 모 (폭원및연장)	위 치	범위	면적(m ²)	필지 수	사업시행자	비용부담자 /부담내용
중로1-86	폭원:20~23m, 연장:356m	시점:중로3-16 종점:중로2-123	확폭	1,584. ⁰⁰	5	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	사업시행자 / 조성 후 무상귀속
중로1-91	폭원:20m, 연장:138m	시점:중로1-86 종점:소로1-1436	신설, 확폭 (노선분리)	1,293. ⁴⁰	1		
중로2-123	폭원:17.5~21 m 연장:610m	시점:소로3-1178 종점:관양동659-11	신설, 확폭 (노선분리)	1,020. ⁶⁰	1		
중로3-112	폭원:12m 연장:277m	시점:중로1-91 종점:중로2-123	신설, 확폭 (노선분리)	1,123. ⁴⁰	4		
계				5,021. ⁴⁰	11		

② 공원·주차장

시설구분	위 치	면 적(㎡)	사업시행자	비용부담자/부담내용
㉔어린이공원	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-3번지 일원	3,955. ³	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	사업시행자 / 조성 후 무상귀속
㉕주 차 장	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-3번지 일원	3,955. ³		

※ ㉔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, 추후 실시계획인가 받을 예정

나)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·공유지

구 분	소관청별 무상양여 국·공유지		
	계	안양시	비고
필 지 수	1	1	공원관리과(관양동 1396-2)
면적(㎡)	1,700. ⁰⁰	1,700. ⁰⁰	
%	100. ⁰⁰⁰	100. ⁰⁰⁰	

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·허가등 의제처리사항
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다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
라. 「수도법」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

마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

바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
사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

아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

10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 【안양시청 도시정비과(☎031-8045-2399)에 비치】 . 끝.